

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

2291

제출년월일 : 2012. 03. 16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포상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포상 제작 수여자의 형식을 통일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·반영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가.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13명에서 7명으로 조정 (안 제13조제2항)

- 당연직(4명) : 위원장(부시장), 부위원장(포상업무 담당 국장), 양 구청장
- 위촉직(3명) : 시장 위촉

나. 포상 제작 서식 개선 (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)

- 포상 제작 수여자가 “안산시장”에서 “안산시장 ○○○”으로 하여 포상물 제작 형식을 통일함으로써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함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2. 6. 28.(목) ~ 7. 18.(수) / 20일간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○ 방침결정문(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계획)

○ 현행 조례(전문)

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 또는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 또는” 으로 하고, “시 소속직원” 을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소속직원” 이라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국장, 4급 사업소장, 구청장으로 한다.” 를 “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.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의 “안산시장 (인)” 을 “안산시장 ○○○ (인)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무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안상철
안	담당·계장 직위·성명	인사계장 김상희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유성 (행정 3107)

신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장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, 시민("외국인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----- 안산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또는 -----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직원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 국장, 4급사업소장, 구청장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·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(3) (생략)</p>	<p>(3) (현행과 같음)</p>
<p><별지 제1호서식></p> <p>제 호</p> <p>표 창 장</p> <p>주소 또는 소속</p> <p>직 성명</p> <p>(표창문)</p> <p>년 월 일</p> <p>안 산 시 장 (인)</p>	<p><별지 제1호서식></p> <p>제 호</p> <p>표 창 장</p> <p>주소 또는 소속</p> <p>직 성명</p> <p>(표창문)</p> <p>년 월 일</p> <p>안산시장 (인)</p>

현

행

개정안

<별지 제2호서식>

제 호

감사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

성명

(감사문

)

년 월 일

안산시장 (인)

감사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

성명

(감사문)

년 월 일

안산시장 (인)

<별지 제3호서식>

제 호

상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

성명

(상문

)

년 월 일

안산시장 (인)

상장

주소 또는 소속

직

성명

(상문)

년 월 일

안산시장 (인)

안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9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8. 29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□ 수정이유

- 공적심사위원 7명중 당연직이 4명, 위촉직이 3명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상향 조정함(3명→5명).(안 제13조제2항)

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시장이 위촉하는 3인”을 “시장이 위촉하는 5인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3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·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 (공적심사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시장이 위촉하는 5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원안과 같음)</p>